

무역상무연구
제73권
2017. 2, pp. 65~90.

논문접수일 2017. 01. 31.
심사완료일 2017. 02. 13.
게재확정일 2017. 02. 14.

영국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워런티)에 관한 연구

신 건 훈* · 이 병 문**

-
- I. 서 론
II. 기존 담보법원칙의 문제점 및 법률개혁의 배경
III.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에 관한 법률 개혁의 주요 내용
IV. 결 론
-

주제어 : 담보(워런티), 2015년 보험법, 보험자책임의 정지, 담보 위반의 치유

I. 서 론

영국 보험법 상 담보(warranty)는 보험계약의 일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법률 상 특별한 계약조항을 의미하고, 또한 당해 조항의 위반은 일반계약법 상 담보위반과는 다른 독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유한 법원칙을 형성한다. 영국 보험법 상 담보에 관한 법원칙은 지나치게 보험자 우호적인 법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 간 이익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원칙이고, 담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 중 가장 악용되는 용어의 일례’로서,¹⁾ 법률가의 입장에서조차 난해한 개념이며, 정의 및 형평성을 결여한 개념으로 인식된다.²⁾

*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제1저자), E-Mail : gunhoon1@gnu.ac.kr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 bmlee@ssu.ac.kr

1) Finnegan v. Allen [1943] 1 KB 425, 430; Barış Soyer,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2nd edn.)*, Cavendish Publishing Ltd., 2006, p. 1.

2) John Hare, “The Omnipotent Warranty: England vs. The World”, *Marine Insurance at the Turn of*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써,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2006년 보험법의 개혁 작업에 착수한 후, 계속해서 일련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최종보고서 및 입법초안을 영국 의회에 제출하였다. 영국 의회는 LC의 최종보고서 및 입법초안을 토대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³⁾ 및 담보와 관련하여 2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⁴⁾ 이 중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은 2014년 7월에 발간된 LC의 최종보고서⁵⁾ 및 입법초안에 기초하여 2014년 12월에 영국 의회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2016년 8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보험담보에 관한 법원칙에 한정하며, LC가 발간한 2014년 보고서 및 최근 발표된 국내·외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보험담보에 관한 기존 법원칙의 문제점 및 법률개혁의 배경을 우선 검토하고, 보험담보에 관한 MIA 1906 및 2015년 보험법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2015년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담보법원칙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해상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입장을 감안할 때, 영국 보험법의 변화는 국내 해상보험업계 및 해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이 연구는 학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보험 및 해운 관련 실무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the Millennium, vol.2(ed. by M. Huybrechts), Intersentia, 2000, p. 37.

- 3) 이 주제에 대해서는 신건훈, “2015년 영국 보험법 상 공정표시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12, 참조.
- 4) 소비자보험에 적용되는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 및 표시)법」(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이하에서 CIDRA라고 칭함)은 2013년 4월 6일에 발효되었고,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에 제정목적은 두고 있는 반면,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의 기본적인 제정목적은 계약당사자 간 이익균형의 달성 및 상호적인 의무 부과를 통한 ‘중립적인’ 법률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Cm. 7758, LC No. 353, 2014. 7, para. 6.27; 신건훈, 전제논문(2016. 12), p. 58).
- 5)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Cm. 7758, LC No. 353, 2014. 7(이하에서는 LC 353이라고 칭함).

II. 기존 담보법원칙의 문제점 및 법률개혁의 배경

1. 기존 담보법원칙의 개관 및 문제점

1) 기존 담보법원칙의 개관

영국 보험법 상 담보는 “해당 담보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자가 특정한 행위의 이행 또는 금지를 약속하거나, 특정한 조건의 충족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⁶⁾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담보는 보험계약의 일개 조항(*term*)으로서 명시조항 또는 법률의 운용⁷⁾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전에 과거 또는 현재 사실에 대하여 행한 진술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후 특정한 의무나 행위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⁸⁾ 담보는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보험계약기간 중 부분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 상 장치로서 18세기부터 부단하게 사용되는 계약조항이다.⁹⁾

-
- 6) MIA 1906 제33조 (1)항.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담보는 발생순서에 따라 2개 유형의 담보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앞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의 이행(또는 금지) 또는 특정한 조건의 충족에 관한 담보는 미래사실 또는 행위에 대한 담보로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이행 또는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에 대한 약속이며, 이러한 행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위반시점으로부터 보험자가 면책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반하여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과거 또는 현재사실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진술로서 구성되며, 그러한 진술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 위험은 개시되지 않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단계에서 확정되는 담보이다(Richard Aikens, “The Law Commissions’ Proposed Reform of the Law of “Warranties” in Marine and Commercial Insurance : Will the Cure be better than the Disease?”, *Reform and Commercial Insurance Law*(ed. by Baris Soyer), Informa, 2008, p. 114; Rob Merkin and Özlem Gürses, “The Insurance Act 2015 : Rebalancing Interests of Insurer and Assured”, *MLB* 2015, p. 1016).
- 7) 보험법 상 담보는 계약의 일부로서 통상적으로 보험증권에 명시되는 계약조항이다. 그러나 여타 계약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는 묵시조항이 유효한 계약의 일부로서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묵시담보는 비해상보험계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해상보험에 고유한 것으로서 계약 그 자체보다는 법률, 즉 판례법 및 제정법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다(Malcolm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4th ed., LLP, 2002, pp. 630~631).
- 8) 구중순, 해상보험, 박영사, 2005, pp. 113~114;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담보법원칙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8, p. 212; Malcolm Clarke, “Insurance Warranties : the absolute end?”, *LMCLQ*, 2007. 11, p. 474 참조.
- 9) Barış Soyer, “Beginning of an new era for insurance warranties?” *LMCLQ*, 2013. 8, p. 384; 과거 또는 현재사실에 대한 담보는 위험인수 당시에 보험자의 위험평가에 도움이 주는 반면, 미래사실에 대한 담보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특정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

영국 보험법에서 담보는 일반계약법 상 담보와는 달리 특별하고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영국 보험법 상 ‘담보’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특정한 계약조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조항의 위반은 특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특유한 제도이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 보험법 상 담보의 법적 성격을 간략하게 개관하자면 다음과 같다.¹¹⁾ 즉, 첫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특정한 계약조항이 담보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서, 계약조항의 분류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요하는 작업이다.¹²⁾ MIA 1906 제35조(1)항에 의하면, “명시담보는 담보의 의사가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식의 문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개 계약조항에 대하여 담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특정한 요건 또는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특정한 보험계약조항에서 담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Rix LJ는 *HIH Casalty & General Insurance Ltd. v. New Hampshire Insurance Co. Ltd.* 사건¹³⁾에서 “이는 해석의 문제이며, ‘warranty’ 또는 ‘warranted’라는 문언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해당 계약조항이 거래의 근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손해발생위험과 관련하여 중요한지 여부, 세 번째 기준은 손해배상이 불만족하거나 부적절한 구제수단인지 여부이다”고 언급하면서, 담보의 해석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개 계약조항이 담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담보의 내용은 담보조항의 문면상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담보조항에 대한 사소한 불일치도 담보의 위반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담보는 엄격하고(strictly) 문자 그대로(literally) 충족되어야만 한다.¹⁴⁾

셋째, 담보의 위반이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협인수 시에 평가된 위험이 보험계약기간 중에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에 포함된다.

- 10) Bariş Soyer, *op. cit.*(2006), p.1 ; 박세민,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 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5. 11, p. 112.
- 11)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건훈, *전계논문*(2012. 8), pp. 212~215;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pp. 288~300 참조.
- 12) LC 353, paras. 13.4~13.5 참조.
- 13) [2001] 2 Lloyd’s Rep. IR 161 ; [2001] EWCA Civ. 735, 101.
- 14) Malcolm Clarke, *op. cit.*(2002), p. 649. 담보의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담보조항의 문면상 요구보다 더 나은 계약의 이행조차도 담보위반으로 귀결될 수 있다(*Benham v. United Guarantee & Life Assurance Co.* (1852) 7 Ex. 744, 752).

담보는 “사고발생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으로서,¹⁵⁾ 이러한 점이 해상보험법 상 담보에 관한 법원칙과 불고지 또는 부실표시에 관한 법원칙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넷째, 담보는 보험청약서 상 “계약의 기초조항”(basis of contract clause)에 의하여 창출될 수도 있다.¹⁶⁾ 18세기에 고안된 과거 또는 현재 사실에 대한 담보, 즉 사실담보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한정하는 수단이었다. 보험계약자에게 진술의 진정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는 부실표시에 관한 법률의 제약요소(즉, 중요성 및 유인기준의 적용)를 제거하고 단순하게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의 효과로서 위험에 대한 허위진술의 중요성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한편 보험자는 19세기 후반 경에 “계약의 기초조항”을 보험청약서에 삽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실담보의 가혹성은 배가되었다.¹⁷⁾

기업보험과 관련하여 청약서 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약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선서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기존의 통상적인 실무관행이며,¹⁸⁾ 보험청약자가 이러한 선서조항을 포함한 청약서에 서명하는 경우에 이러한 서명은 청약서 상 일체의 진술을 담보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즉, 청약서 상 진술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자의 사소한 실수도 담보위반으로 귀결되고, 따라서 보험자는 일체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판례인 *Dawsons Ltd. v. Bonnin* 사건¹⁹⁾에서 보험계약자는 자사 소유의 트럭에 대하여 부보하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청약서에 글래스고우의 중심부에 위치한 회사 주소를 기재하였고, 트럭의 통상적인 주차장소로서 불행히도 “상기 주소”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트럭은 글래스고우의 외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에서 보험자는 해당 불일치가 담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당해 위반이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청약서는 청약서 상 일체의 진술이 “계약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선서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상원은 이 조항이 청약서의 진술내용을 담보로 전환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계약의 기초조항은 소비자보험의 경우에 CIDRA 제6조에 의거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비소비자보험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약조항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15) MIA 1906 제33조 (3)항.

16) LC 353, paras. 13.6-13.10 참조.

17) Rob Merkin and Özlem Gürses, *op. cit.*, p. 1016.

18) 전해동·신건훈,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p. 415.

19) [1922] 2 AC 413 ; 1922 SC(HL) 156.

있다.²⁰⁾

다섯째, 담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부는 담보위반의 요건과 관련하여 논외의 대상이다. 담보는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책임의 범위(즉, 보험계약 상 커버되는 위험의 범위 및 크기)를 한정하기 위하여 계약에 포함되고, 담보의 위반은 보험법 상 위험의 변경(alteration of risk)을 구성한다.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위험은 계약에서 약정된 위험과 상이한 위험으로 변경되고, 보험자는 약정된 위험과 상이한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담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²¹⁾

마지막으로 담보위반의 효과는 영구적이고 치유불가능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단 담보가 위반되면 위반 전 상태로 복원되거나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험자는 위반일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책된다.²²⁾

2) 기존 담보법원칙의 문제점

한편 MIA 1906에 구현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상법의 전통적인 가치, 즉 계약자유의 원칙 및 법적 확실성의 추구이다. 영국에서 빅토리아여왕 시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성문법화 운동은 개별 판례를 통하여 법원칙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함으로써 상업계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MIA 1906에 구현되어 있는 보험법원칙의 엄격성 및 확실성으로 인하여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상 상당한 불공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²³⁾ 보험자가 보험계약 상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를 한정 또는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오랫동안 담보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담보에 관한 독자적이고 특유한 법원칙이 형성되었으나, 그 중 일부 특징은 사법적²⁴⁾·학문적²⁵⁾ 범

20) LC 353, para. 13.10.

21) H. Bennett 교수는 담보법원칙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담보위반이 위험의 변경을 구성한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상기 담보법원칙이 정당화되며, 담보위반과 손해 간 인과관계 기준 및 비례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담보의 성격 및 기능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Howard Bennett, "Reflections on Values : The Law Commissions' Proposals with respect to Remedies for Breach of Promissory Warranty and Pre-formation Non-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in Commercial Insurance", *Reforming Marine and Commercial Insurance Law*(ed. by Baris Soyer), Informa, 2008, pp. 166~168).

22) MIA 1906 제34조 (2)항 및 MIA 1906 제33조 (3)항.

23) Howard Bennett, *op. cit*(2008), p. 159.

24) *Forsikringsaktieselskapet Vesta v. Butcher* 사건에서 Lord Griffiths는 "담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상 담보의 위반이 보험금지급 거절사유

주 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고찰하자면 다음과 같다.²⁶⁾ 즉, 첫째, 관련 법원칙은 위반사실의 중요성 또는 위반의 경중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소한 불충족도 담보위반을 구성한다는 보험법원칙은 일반계약법원칙뿐만 아니라, 보험법 상 최대 선의원칙과도 괴리되는 법원칙으로서 지나치게 보험자에게 우호적인 법원칙이다. 담보위반의 가혹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담보문언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정도로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은 너무 쉽게 좌절될 수 있고, 단지 인간으로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평범한 부주의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보호라는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쉽게 훼손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²⁷⁾

둘째, 계약의 기초 조항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서 상 답변이 “담보된다거나, 계약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선서조항에 대한 서명의 의미를 이해하는 보험계약자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 상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실수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어야 하는 타당한 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법 상 “합정”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²⁸⁾

셋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담보위반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무과하거나, 손해 발생 전에 위반이 치유된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법률상 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사고와 무관한 담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때문에 이러한 법원칙은 보험자에 의하여 기술적인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담보의 기능이 보험계약의 개시 후에 위험의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위험의 변경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의 관점에서 볼 때, 담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즉 자동적이고 영구적인 보험자면책은 당사자의 이익 균형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위험이 변경이 일시적이거나, 변경

가 된다는 사실이 영국 보험법에 대한 매력력을 훼손시키는 요인 중 한가지”라고 언급하였다 ([1989] AC 852, 893-894).

25) T. J. Schoenbaum, “Warranties in the Law of Marine Insurance : Some Suggestion for Reform of England and American Law”, *Tulane M.L.J.* 267, 1999; J. Hare, “The Omnipotent Warranty : England v. The World”, *Marine Insuran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ed. by M. Huybrechts), Vol. 2, Intersentia, 1999, p. 37; B. Soyer, “Marine Warranties : Old Rules for the New Millennium?”,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ed. by D.R. Thomas), LLP, 2002, p. 161.

26)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건훈, 전계논문(2012. 8), pp. 216-218 ;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 상 담보법원칙의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8, pp. 255-260 참조.

27) Malcolm Clarke, *op. cit*(2002), p. 638; Malcolm Clarke, *op. cit*(2007), p. 478.

28) *Zurich General Accident & Liability Insurance Co. v. Morrison* [1942] 2 KB 53, 58.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없이 법률의 운용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피보험자의 보상청구권이 박탈되어야 할 정당한 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²⁹⁾

2. 법률 개혁의 배경

LC는 담보에 관한 법률 개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MIA 1906 제33조~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법원칙의 개혁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설문하였고, 그 결과 88%의 응답자가 개혁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순회법원의 판사들은 “현행 법원칙이 보험자의 이익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국 보험자협회(ABI)는 담보법원칙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보험과 관련하여 기본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어야 하고, 따라서 담보위반의 효과에 관한 제정법 규정은 계약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한 임의법규로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험관리인 협회인 Airmic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실무지침서에서 (1) 일체 담보의 폐기, (2) 담보위반의 효과를 조건부로 전환, 및 (3) 계약의 기초조항을 배제하는 표준보험증권을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실무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LC는 시장선도적인 보험업계의 변화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법률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실무관행의 변화는 여전히 법률과 실무관행 간 비일관성 및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³⁰⁾

LC가 제시하는 법률 개혁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자면 다음과 같다.³¹⁾ 첫째, 기존 법원칙은 계약당사자의 이익균형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게 보험자 우호적인 법원칙이다. 단지 “워런티” 또는 “계약의 기초”라는 용어의 사용만으로 일체 책임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권이 허용되어야 할 논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보험자가 손해와 무관한 담보위반을 기술적인 항변수단으로 활용하는 실무관행은 불공정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담보에 관한 법원칙은 상당한 보험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Mactavish가 2012년~2013년 연매출액 £5천만 이상인 민간기업 및 공기업 400여 업체를 대상으

29) Barış Soyer, *op. cit(2013)*, p. 385.

30) LC 353, paras. 14.11~14.16 참조.

31) LC 353, paras. 14.1~14.10 참조.

로 조사한 결과, 담보가 세 번째로 많은 보험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조사되었으며,³²⁾ 위험관리자협회인 Airmic 또한 2013년 5월에 12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보험계약자의 관심을 초래한 세 번째 관심사는 담보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³³⁾

셋째,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담보에 관한 영국의 보험법원칙은 지나치게 보험자 우호적인 불균형적인 법률이다. 대부분의 보통법계 국가는 애초에 MIA 1906에 기초한 보험법을 채택하였으나, 영국의 담보법원칙과 상당히 괴리되는 법원칙을 이미 채택하였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보험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캐나다 대법원은 담보의 위반이 담보와 관련되는 특정한 유형의 손해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보험자의 구제수단을 허용한다.³⁴⁾ 미국의 경우, 개별 주에서 개정된 제정법이 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 작용한다. 뉴욕주의 경우, 담보의 위반이 손해발생위험을 중대하게 증가시킨 경우에 한정하여 담보 위반에 근거한 보험계약의 취소가 허용된다.

시민법계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과 무관한 담보의 위반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논리는 특히 이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스칸디나비아 해사법연구소의 Trine-Lise Wilhelmsen 교수는 시민법계의 관점에서 볼 때, 담보라는 보통법계의 개념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욱 어려운 개념”이며, 용어 자체는 “기만적으로 평이”하지만, 위반의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적 공정성 또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³⁵⁾ 케이프타운대학의 John Hare 교수는 담보가 공정성에 대한 “방만한 일탈”이라고 묘사하였다.³⁶⁾

넷째, 영국 판례법에서는 보험청약서 상 계약의 기초(basis of contract)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특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소비자보험의 경우, CIDRA 제6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기초조항은 무효화되었지만, 비소비자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동 조

32) 이 조사 결과, 보험분쟁의 4대 주요 원인은 보험계약의 커버범위, 손해액 산정, 담보위반 및 고지의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LC 353, para. 1.34; 신건훈, 전제논문(2016. 12), p. 60 참조).

33) Airmic News, “Losing claims through innocent non-disclosure is the top concern for corporate insurance buyers”, 1 July 2013.

34) *Century Insurance Co. of Canada v. Case Existological Laboratories Ltd.(The Bamcell II)* [1984] 1 Western Weekly Report 97.

35) Trine-Wise Wilhelmsen, “Duty of Disclosure, Duty of Good Faith, Alteration of Risk and Warranties : An Analysis of the Replies to the CMI Questionnaire”, *CMI Yearbook*, 2000, p. 392.

36) J. Hare, “The Omnipotent Warranty : England v. The World”, *Marine Insuran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Vol. 2(ed. by M. Huybrechts), Intersentia, 2000, p. 37.

항의 효력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실무계에서 동 조항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따라서 법률과 실무관행 또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 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LC는 담보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정법과 판례법의 입장을 일치 시킴으로써, 법률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영국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명백하게 담보라고 표시된 계약조항 위반의 경우에도 영구적인 보험자면책이 아니라, 보험자책임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해석법을 제시해왔다.³⁷⁾ 즉, 보험계약자가 해당 계약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책임을 위반기간동안 정지되지만, 위반이 치유되는 경우에는 재개된다고 판결하였다. 예를 들면, *Kler Knitwear Ltd. v. Lombard General Insurance Co. Ltd.* 사건³⁸⁾에서도 난경보장치의 정기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담보가 “정지적인 조건”(suspensive condition)이라고 판결되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Morland J*는 “해당 계약조항의 제목이 ‘warranty’이고, 내용 상 ‘it is warranted that...’이라는 문언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어의 진정한 의미 상 계약당사자가 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 계약조항을 의도하였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 그러한 단어는 보험계약 상 빈번하게 사용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인정하였으나, *Morland J*는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계약조항에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해당 계약조항의 본질이라고 판단하였다. *Morland J*는 해당 계약조항이 상투적인 담보의 효과를 갖는 경우, “완전한 모순이며,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한 모순 및 불합리성은 계약에 사용된 용어(즉, warranty라는 용어)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의 증빙이며, 따라서 해당 용어에 대한 상이한 해석법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계약당사자가 담보의 효과를 적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난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이 행하여진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특정한 계약조항이 표면적으로 명백하게 담보의 효과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일부 판례에서 담보위반의 가혹한 결과를 회피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상이한 해석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LC는 법률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계약조항에 대한 법원의 인위적인 해석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정법 상 판례법의 입장을 반영하여 담보위반이 정지적인 효과, 즉 잠정적인 보험자책임을 정지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³⁹⁾

37) B. Soyer,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2th ed., Cavendish Publishing Ltd. 2006, para. 2.79.

38) [2000] Lloyd's Rep. IR 47, 49-50.

39) LC 353, paras. 17.8~17.12.

Ⅲ.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에 관한 법률 개혁의 주요 내용

1. 계약의 기초조항 사용 금지(제9조)

현재사실에 관한 담보는 2012년 소비자보험법 제6조 및 2015년 보험법 제9조에서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된다.⁴⁰⁾ 2015년 보험법 제9조에서는 청약서 상 표시가 계약의 기초조항을 구성한다는 선서를 통하여 담보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담보전환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의 주요 제정목적은 계약의 기초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2015년 보험법 상 유일한 강제규정이다. 보험계약체결의 전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행하는 표시는 청약서 상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계약체결 전 의무의 일부로서 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로 구성될 수 있으나, 제9조에 의거하여 보험청약서, 보험계약조항 또는 기타 계약 상 장치를 이용하여 이러한 표시가 담보로 전환된다고 규정한 일체의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다른 한편으로 LC는 동 조항이 제정법에 의하여 무효화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여전히 2가지 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⁴¹⁾ 즉, 첫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전에 중대한 부실표시를 행하는 경우, 이는 2015년 보험법 상 공정표시의무 위반으로 귀결된다. 둘째, 보험자가 보다 광범위한 면책권을 행사하고자 원하는 경우에 여전히 과거 또는 현재 사실에 대한 담보를 활용하는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는 청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삽입해야만 한다.

한편 제9조는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에 관한 규정 중에서 유일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 합의는 금지되며,⁴²⁾ 따라서 계약의 기초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계약조항은 무효로서 취급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특정한 진술의 진정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요구는 계약조항에 의하여 실행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수단에 의거하여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40) 2015년 보험법에서 담보법원칙은 Part 3에 규정되어 있으며, Part 3는 3개 조항, 즉 제9조(담보 및 표시), 제10조(담보의 위반) 및 제11조(실제손해와 무관한 계약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LC 353, para. 15.3.

42) 2015년 보험법 제16조 (1)항 및 (2)항; LC 353, para. 16.12.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영국 보험법 상 가장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법원칙은 폐기되었다.⁴³⁾

2. 담보위반의 효과 및 기타 고려사항(제10조)

1)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위반의 효과

2015년 보험법 제10조에서는 담보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3가지 주요요소, 즉 (1) 담보 위반에 대한 기존의 구제수단(즉, 자동적인 보험자면책)은 폐기되고, 대안적인 구제수단으로서 (2) 위반기간동안 잠정적인 보험자책임의 정지, 따라서 (3) 위반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책임은 치유시점부터 재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담보위반의 효과에 대한 개혁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요요소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MIA 1906 제33조 (3)항에서는 담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영구적·자동적인 성격의 보험자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보험법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MIA 1906에 규정된 구제수단을 폐기한다.⁴⁴⁾ 즉, 첫째, 제10조 (1)항에서는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 여부에 상관없이) 담보 위반이 보험자면책을 초래한다는 취지의 일체의 법원칙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제10조 (7)항 (a)호에서는 담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보험자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MIA 1906 제33조 (3)항의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담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보험자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제정법원칙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자동적인 면책을 규정하는 기존의 판례법 및 제정법규정의 효력은 2015년 보험법의 발효와 동시에 이미 상실되었다.

둘째, 2015년 보험법 제10조 (2)항에서는 담보의 위반 후~치유 전의 보험자책임과 관련하여 “계약 상 담보가 위반된 이후부터 위반이 치유되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 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 법률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LC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혁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담보위반의 가혹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담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영구적인 면책권을 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정법 상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MIA 1906 제34조 (2)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위반의 치유 사실 및 손해

43) Rob Merkin and Özlem Gürses, *op. cit.*, p. 1017.

44) LC 353, para. 17.17.

발생 전에 담보가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항변사유로서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보험법 제10조 (7)항 (b)호에서는 MIA 1906 제34조 (2)항을 포함한 제34조 전체가 무효화된다고 규정하고 있고,⁴⁵⁾ 또한 제10조 (4)항에서는 위반이 치유되는 경우에 보험자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반의 효과는 위반기간에 한정하여 보험자책임이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고, 따라서 위반이 치유되는 경우에 해당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재개되어야 한다.

2) 담보위반의 치유 여부 및 치유 시점에 대한 판단기준

보험자책임의 정지기간이 종료되고, 따라서 보험자책임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위반을 치유해야만 하지만, 위반의 치유 여부 및 치유 시점에 대한 판단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상당한 개념 상의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판단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 보험법에서는 담보 위반이 치유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2가지 상황을 제시한다.⁴⁶⁾ 첫 번째 상황은 소위 “일반적인 담보”(general warranty)라고 지칭되는 것으로서, 담보는 문면 그대로 해석 및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률의 관점에서 볼 때, 다수 위반은 고착화된다는 점에서 치유 불가능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 상 일종의 해적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로서 피보험선박이 특정한 해협을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아무런 사고 없이 해당 해협을 통과한 이후에 안전한 해역에 도달한 경우”이다. 기존 법률의 엄격한 해석관점에서 볼 때, 당해 선박이 사고 없이 안전한 해역에 무사히 도달하였더라도, 일단 위반이 발생하였고, 위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보의 위반이 진정으로 치유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5년 보험법 제10조 (5)항 (b)호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담보의 위반을 종료”한 경우에 담보의 위반은 치유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기 상황은 제10조 (5)항 (b)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으로서 위반이 치유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LC는 위험이 위반의 치유 이후에 위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면 보험자의

45) 다만 2015년 보험법 제10조 (3)항에서는 MIA 1906 제34조 (1)항 및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반이 용인되는 3가지 경우, 즉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담보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후속 법률의 변화로 인하여 담보 충족이 위법이 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위반에 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MIA 1906 제34조 전체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1)항 및 (3)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6) LC 353, paras. 17.31~17.41 참조.

책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할 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⁴⁷⁾

두 번째 상황은 소위 “시간특정 담보”(time-specific warranty)로서, 담보 상 준수해야 할 시간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이다.⁴⁸⁾ 2015년 보험법 제10조 (6)항에서는 그러한 담보를 “확인가능한 시간에 의하여”(by an ascertainable time) 충족되어야 하는 담보라고 묘사한다. 제10조 (6)항에서는 담보가 확인가능한 시간에 의하여 (a) 특정한 사항의 이행 또는 불이행, (b) 특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c)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부 여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담보위반으로 귀결된다고 규정한다. 기존 법률의 엄격한 해석 관점에서 볼 때, 최종기한이 경과되는 경우에 해당 담보의 치유는 불가능하다. 담보의 충족을 위하여 약속된 특정시한이 경과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반상태를 종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특정 담보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의 엄격한 입장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제10조 (5)항 (a)호에서는 담보가 위반되었더라도, 위험이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의도된 위험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essentially the same as...) 상태로 복원된다면 담보의 위반이 치유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면,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화재경보장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담보조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정 월의 10일에 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9일까지는 담보가 위반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은 정지되지만, 지체된 점검이 시행된 10일부터 위험은 계약체결 당시의 위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복원되었고, 보험자의 책임은 재개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일례로서 와인의 저장기간에 관한 담보의 경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담보조항에서 와인은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시원한 와인저장고에 수평으로 보관되어야 한다고 요구되었으나, 이 약속은 준수되지 않았고, 4개월 후에 담보조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저장되었으나, 코르크 마개가 손상된 상태였다. 이 시점에서 보험의 목적인 와인의 저장방법은 담보조항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태로 되었으나, 담보의 위반이 진정으로 치유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와인에 대한 위험상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의도된 위험상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우 와인에 대한 위험은 계약체결 당시의 위험상태로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의 위반이 치유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간특정 담보의 치유 여부를 판단할 때, 올바른 접근법은 우선 담보가 계약에 삽입된 목적을 우선 고려한 후, 그러한 목적의 달성이 좌절되었는지, 아니면 위반

47) LC 353, para. 17.37.

48) LC 353, para. 17.40.

의 치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위험이 보험자가 인수할 당시의 위험으로 복원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담보가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 위험이 본질적으로 계약체결 당의 상태로 복원되었다면, 보험자가 담보위반에 근거하여 영구적인 면책권을 행사해야 할 논거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⁴⁹⁾

3) 제10조 관련 기타 고려사항

2015년 보험법 제10조는 주로 전술한 담보위반의 효과 및 위반의 치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수적인 고려사항을 고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유형의 담보는 위반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담보조항 상 건물이 벽돌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목재로 건축된 경우라면 재건축하지 않는 한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기밀유지의무에 관계되는 담보는 일단 위반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미래행위에 대한 담보와는 달리,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상태를 확정하는 담보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당해 위반은 치유되기 어렵다.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상태에 대한 담보위반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처음부터 개시되지 않는다. *The Good Luck* 사건⁵⁰⁾에서 Lord Goff는 이러한 담보의 성격을 일종의 계약성립에 대한 정지조건이라고 규정하였다. 2015년 보험법 제10조 (4)항 (b)호는 일부 유형의 담보위반이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나, 위반이 치유된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¹⁾

둘째, 2015년 보험법 제10조는 보험계약 상 담보에 적용되며, 담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일체 유형의 보험계약에 적용된다.⁵²⁾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수단은 담보의 유형, 즉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일체의 담보에 적용되며, 따라서 MIA 1906 제39조~제41조에 규정된 묵시해상담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제수단(즉, 자동적인 보험자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MIA 1906 제33조 (3)항의 두 번째 문장은 제10조 (1)항 및 제10조 (7)항에 의거하여 폐기된다.

셋째, 제10조 (2)항에서는 담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위반기간에 한정하

49) LC 353, para. 17.48.

50) *Bank of Nova Scotia v. Hellenic Mutual War Risks Association (Bermuda) Ltd.(The Good Luck)* [1992] 1 AC 233, 237~238.

51) LC 353, para. 17.52.

52) LC 353, para. 17.53.

잠정적인 보험자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제11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⁵³⁾ 따라서 담보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유형의 손해발생가능성 또는 특정한 시간/장소에서의 손해발생가능성을 경감할 의도로써 계약에 포함된 경우, 담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해당 유형/시간/장소에 한정하여 정지되는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면, 화재손해의 발생가능성을 경감할 의도로써 도입된 담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 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화재손해에 한정하여 정지되는 효과를 갖고, 기타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유효한 상태로 존속된다.

넷째, 담보위반에 기인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여타 보험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위반 전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해야 하며,⁵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또는 할부보험료의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 MIA 1906 제33조에서는 담보가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자는 위반일로부터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4조 (1)항 및 (3)항에서는 담보가 위반되더라도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3가지 예를 규정하고 있다. 즉, (1)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담보의 충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2) 담보의 충족이 후속하는 법률에 의하여 위법이 되는 경우, 또는 (3) 보험자가 위반에 기인한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이다. 2015년 보험법에서는 해상보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MIA 1906 제34조를 폐기하는 대신,⁵⁵⁾ 제10조 (3)항에서는 일체 유형의 보험에 적용되는 위반의 용인사항으로서 MIA 1906 제34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임의법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제정법의 규정과 상이한 대안적인 약정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특정한 계약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영구적인 보험자면책으로 귀결된다고 규정한 계약조항을 포함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2015년 보험법의 규정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규정된 계약조항의 효력은 2가지 절차적인 요구사항, 즉 첫째,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해당 조항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한다. 둘째, 당해 계약조항이 의문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한다.⁵⁶⁾ 담보에 관한 법률개혁을 추구하는 한가지 주된 이유는 위반의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다. 특정한

53) 2015년 보험법 제11조 (4)항; LC 353, paras. 17.54~17.55.

54) 2015년 보험법 제11조 (4)항 (a)호.

55) 2015년 보험법 제10조 (7)항 (b)호.

56) 2015년 보험법 제17조 (2)항 및 (3)항.

계약조항의 준수가 보험자에 의하여 인수된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 보험자는 2015년 보험법에 규정된 위반의 효과보다 가혹한 효과를 규정한 계약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판례법 하에서도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명확성 없이 자동적인 보험자면책을 규정한 계약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⁵⁷⁾

LC는 제10조에 대하여 임의법규로서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보험에 관한 한, 영국 상법의 핵심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중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은 임의법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고, 따라서 시장에서 장기간 활용가능한 보험상품의 개발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⁵⁸⁾

4) 법률 개혁이 해상보험에 미치는 영향

LC는 보험법 개정과정에서 담보에 관한 개혁 법률이 비해상보험뿐만 아니라, MIA 1906에 의하여 지배되는 해상보험의 담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으나,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거의 9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구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⁵⁹⁾ 결국 2015년 보험법 제10조는 보험계약의 유형에 상관없이 일체 유형의 담보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담보에 관한 새로운 법원칙이 해상보험계약 상 담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MIA 1906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담보⁶⁰⁾의 존속필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는 다소 양분되는 현상을 보였다. LMA는 “여전히 중요하고, 이해도가 높으며, 존속되어야만 한다. 묵시담보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국제 언더라이팅협회(IUA)는 “계약의 기초를 형성하는 편리하고 유용한 수단”이라고 묘사하였다. 이에 반하여 소수의 응답자는 묵시담보가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명시담보로서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묵시담보의 폐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LC는 해상묵시담보에 대한 어떠한 법률의 변화도 권고하지 않는다. 또한 LC는 해상묵시담보가 명시담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즉, 해상묵시담보의 위반은 명시담보의 위반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위반은

57) LC 353. paras. 17.72~17.75.

58) Barış Soyer, *op. cit.*(2013), p. 397.

59) LC 353. para. 17.76.

60) MIA 1906에서는 4가지 유형의 묵시담보, 즉 감항성(제39조 (1)항), 항구의 안전성(제39조 (2)항), 감화성(제40조) 및 항해사업의 적법성(제4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묵시담보는 반대되는 약정의 부재 시에 법률의 운용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에 묵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자책임의 정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2015년 보험법 제10조의 규정은 해상보험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MIA 1906 상 묵시담보를 포함한 일체의 담보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⁶¹⁾

한편 해상묵시담보가 현대의 보험실무관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묵시담보와 명시담보의 구분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⁶²⁾ 항해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감항성담보는 적하보험계약 상 보통 적용되지 않으며,⁶³⁾ 감화성담보 또한 보통 표준적하보험계약 상 적용되지 않는다.⁶⁴⁾ 19세기 판례에서 다수 발견되는 안전항담보와 근래에 제기된 소송은 거의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선박은 항만당국 및 선급협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로 인하여 항구의 통상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적법성담보는 중요한 것이지만, 제정법 상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적법한 항해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특정한 유형/시간/장소의 손해에 관계되는 계약조항의 위반(제11조)

1) 제11조에 함축되어 있는 법률정책의 의미

기존 보험법 상 특정한 담보위반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일체 책임에 대하여 적용되며, 보험자는 계약 상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며, 위반된 담보의 성격 또는 발생한 손해의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담보가 특정 유형의 손해발생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다면 관점에서 담보의 위반이 위반과 무관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LC의 입장이다.⁶⁵⁾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결과, 2015년 보험법 제11조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손해 또는 특정한 시간/장소에서의 손해에 관계되는 담보의 위반은 해당 유형의 손해 또는 시간/장소에서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에게 구제수단을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담보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일체의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5년 보험법 제11조가 함축하고 있는 LC의 법률정책을 예시를 통하여 시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화재경보장치의 설치를 요구하는 계약조항의 위반

61) LC 353. paras. 17.79~17.81.

62) Barış Soyer, *op. cit.*(2013), p. 395.

63) Institute Cargo Clauses 2009(ICC 2009), 제5조 (3)항 참조.

64) ICC 2009, 제15조 (3)항.

65) LC 353, para. 18.2.

은 화재 관련 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둘째,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는 기간 중 야간에는 선상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의 위반은 경비원의 배치가 요구된 시간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책임이 정지되어야 한다.

한편 일체의 담보, 정지조건 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조항이 모두 특정한 위험에 관계되지는 않는다. 보험계약자의 범죄기록과 같은 일부 계약조항은 보험자의 포괄적인 위험평가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이고, 자동차의 사용을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 목적으로 한정하는 일부 계약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범위 또는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제11조는 이러한 계약조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지급기한에 관한 담보와 같이 위험과 무관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LC가 2015년 보험법 제11조의 규정을 통하여 근절하고자 하는 폐해는 보험자가 손해와 무관한 담보의 위반을 기술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자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입증의 곤란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써, 담보 위반이라는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수단의 사용은 선량한 실무관행이 아니며, 따라서 LC는 제11조에서 명확하게 손해와 무관한 계약 조항의 위반을 근거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⁶⁶⁾

2) 제11조의 법률적 의미

전술한 문제는 제11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제11조 (1)항은 (a) 특정한 유형의 손해, (b)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또는 (c) 특정한 시간에 발생하는 손해발생위험을 경감하려는 의도로써 작성된 일체의 보험계약조항에 적용된다. 제11조 (2)항에서는 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상이한 유형의 손해 또는 상이한 장소/시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항의 위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제11조의 법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1조 (1)항은 특정한 유형의 손해발생위험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써 도입된 계약조항의 준수라고 언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한다.⁶⁷⁾ 이 조항에서 의도하고 있는 객관적인 요소는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조항의 준수가 갖는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해당 계약조항의 준수가 손해를 방지할

66) LC 353, para. 18.7.

67) LC 353, paras. 18.13~18.14.

수 있었는지 여부 또는 해당 계약조항의 위반이 손해발생의 원인 또는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인과관계적인 요소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11조는 단순히 해당 계약조항의 준수가 실제로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손해발생가능성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할 뿐이다.

둘째, 제11조 (1)항이 손해발생위험과 무관한 계약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며, 또한 제11조 (1)항에서 전체적으로(as a whole) 위험을 한정하는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포괄적으로 보험자의 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로써 작성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향후 영국 법원은 향후에 특정한 계약조항이 특정한 유형의 손해 또는 특정한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계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보험계약의 범위 또는 보험자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로써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에 내포되어 있는 개혁의 목표는 보험자가 발생한 손해와 무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손해와 무관한 담보위반에 의존하는 불량한 실무관행이다. LC는 제11조의 예외규정을 통하여 보험료지급기한을 한정하는 계약조항과 같이 위험과 전혀 관계없는 다수의 계약조항이 존재하며, 기타 일부 계약조항(예를 들면, 해상보험계약 상 선급 관련 계약조항, 자동차의 용도를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한정하는 계약조항 등)은 특정한 위험이 아닌 전체적인 위험평가에 관계되고, 보험계약의 범위 또는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는 계약조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⁶⁸⁾ 이러한 계약조항의 준수는 보험계약 전반에 관계되고, 따라서 위반되는 경우에 일체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위반의 치유시점까지 정지되어야 한다.

셋째, 제11조 (2)항에서는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보험자는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실제손해와 무관한 상이한 유형의 손해 또는 상이한 장소/시간의 손해에 관계되는 계약조항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11조 (1)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1조 (2)항은 보험자의 구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작용한다.

넷째, 특정한 계약조항의 범주 및 계약조항 준수의 결과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당해 계약조항의 내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사실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중요한 점은 위반과 손해 간 인과관계 기준의 적용 여부이지만, LC는 해당 계약조항의 위반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법

68) LC 353, paras. 18.18~18.21.

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⁶⁹⁾ 즉, 해당 계약 조항의 위반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원인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배제되어야 하고, 해당 계약조항이 특정한 유형의 손해 또는 특정한 시간/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계된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충분하며,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는 실제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위반-손해 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요구되는 경우, 즉 인과관계 기준의 도입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한 보호수단을 향유한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특정한 유형의 자물쇠를 현관문에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조항이 주거침입 및 이에 부수하는 방화 및 재산 손해와 같은 관련 사고의 발생위험을 감소하려는 의도로써 도입된 경우를 상정해 보자. 해당 자물쇠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에 관계되는 보험자의 책임은 위반의 치유 시점까지 정지된다. LC의 견해에 의하면, 주거침입이 현관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따라서 실제로 당해 계약조항의 위반이 손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주거침입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섯째, 제11조는 담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손해발생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써 작성된 일체의 보험계약조항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LC는 해당 계약조항이 담보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 즉 보험계약 조항의 분류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회피하고자 기대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해당 계약조항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⁷⁰⁾ 따라서 이 조항은 담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제10조와는 달리 (해상묵시담보를 포함한) 일체의 담보, 계약의 정지조건, 위험한정조항 및 면책조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한편 계약 조항의 유형은 보험자에 부여되는 구제수단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계약조항이 정지조건이고 정지조건이 위반되는 경우, 해당 조건의 충족 시까지 일반적으로 보험자책임은 개시하지 않지만, 제11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특정한 유형의 손해에 관계되는 보험자의 책임을 제외한 기타 보험자책임은 개시된다. 따라서 제11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자책임은 특정한 유형의 손해에 대해서만 정지된다.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1조는 상이한 방식으로 운용되지만,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제10조는 담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계되고, 따라서 담보조항에 대해서만

69) LC 353, para. 18.39.

70) LC 353, para. 18.41. 제11조는 보험계약조항에 대한 기술적인 분류법을 포기함과 동시에 영국 보험법 상 위험변경이론에 대한 보다 총론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다(Bariş Soyer, *op. cit.*(2013), p. 390).

적용된다. 제11조는 담보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기타 일체 유형의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1조는 특정한 위험에 관계되는 일부 담보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포괄적인 위험평가에 관계되는 일부 계약조항(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의 범죄 기록 및 자동차의 용도 제한에 관계되는 담보)은 제11조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 한편 일부 담보조항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제10조는 제11조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담보가 제11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책임은 제10조 (2)항 하에서 특정한 유형의 손해 또는 특정한 시간/장소의 손해에 대해서만 정지된다. LC는 제10조 및 제11조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험자에 의하여 손해와 무관한 담보위반이 기술적인 항변수단으로 활용되는 실무관행 상 폐해를 제거하며, 영국 보험법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법원에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⁷¹⁾

IV. 결 론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에 관계되는 주요한 법률 개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보험법 제9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기초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강제법규로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법률조항이다.

둘째, 담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2015년 보험법 제10조에서는 (1) 담보 위반에 대한 기존의 구제수단(즉, 자동적인 보험자면책)은 폐기되고, (2) 보험자책임은 위반시점부터 정지되어야 하며, (3) 담보의 위반이 치유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보험자책임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의 치유 여부와 관련하여 위험은 계약체결 시점의 위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구제수단은 일체 유형의 담보에 적용되며, 위반에 대하여 단일의 구제수단이 적용된다.

셋째, 2015년 보험법 제11조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손해 또는 특정한 시간/장소에서 손해에 관계되는 계약조항의 위반은 해당 유형의 손해 또는 해당 시간/장소에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책임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규정한다. 2015

71) LC 353, paras. 18.43~18.46.

년 보험법 제11조를 통하여 근절하고자 하는 폐해는 보험자가 손해와 무관한 담보의 위반을 기술적인 항변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5년 보험법은 계약당사자의 이익균형을 달성하고, 보다 공정한 구제수단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판례법을 통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의미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동안은 법적 불확실성의 원천, 거래비용 및 소송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개혁 법률 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으며, 새로운 구제수단은 당사자의 이익균형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용 상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구제수단으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영국 보험법의 신뢰 및 런던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구종순, 해상보험, 박영사, 2005.

박세민,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5. 11.

신건훈, “2015년 영국 보험법상 공정표시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12.

_____,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_____,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최대선의원칙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8.

전해동·신건훈,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Aikens, Richard, “The Law Commissions’ Proposed Reform of the Law of “Warranties” in Marine and Commercial Insurance : Will the Cure be better than the Disease?”, *Reforming Marine and Commercial Insurance Law*(ed. by Baris Soyer), Informa, 2008.

Bennett, Howard, “Reflections on Values : The Law Commissions’ Proposals with respect to Remedies for Breach of Promissory Warranty and Pre-formation Non-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in Commercial Insurance”, *Reforming Marine and Commercial Insurance Law* (ed. by Baris Soyer), Informa, 2008.

Clarke, Malcolm, “Insurance Warranties : the absolute end?”, *LMCLQ*, 2007. 11.

_____,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4th ed., LLP, 2002.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Cm. 7758, LC No. 353, 2014. 7.

Merkin, Rob and Özlem Gürses, “The Insurance Act 2015 : Rebalancing Interests of Insurer and Assured”, *MLB*, 2015.

Soyer, B., “Beginning of a new era for insurance warranties?”, *LMCLQ*, 2013. 8.

_____, “Reforming Insurance Warranties-are we finally moving forward?”,

Reforming Marine and Commercial Insurance Law(ed. by B. Soyer), Informa, 2008.

_____,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2th ed., Cavendish Publishing Ltd., 2006.

_____, “Marine Warranties : Old Rules for the New Millennium?”,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ed. by D.R. Thomas), LLP, 2002.

ABSTRACT

A Study on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Gun-Hoon SHIN · Byung-Mun LEE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insurance law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insurance contract and developed very different rule of insurance law,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At the time of Lord Mansfield, warranty, that is,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and Scottish Commissions proposed very dramatic reform of law in the field of warranty law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through the Insurance Act 2016.

This article intends to consider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ew regime of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and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the Insurance Act 2015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asis of the contract clauses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of no effect and representations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warranties by means of a policy term or statement on the proposal form. This requirement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avoided by the use of a contract term and the arrangement of contracting out by parties should be of no effect. Secondly, The existing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that is,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moved. Instead,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suspended from the point of breach of warranty and reattach if and when a breach of warranty has been remedied. Thirdly, A breach of warranty should genally be regarded as remedied where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it. In the other hand, for time-specific warranties which apply at or by an ascertainable time, a breach should be regarded as remedied,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Fourthly, where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ct relates to a particular kind of loss, or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the breach of that term should only give the remedy in relation to loss of that particular kind of loss, or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Finally, whether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t relates to loss of a particular kind of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should be determined objectively, based on whether compliance with that ther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the occurrence of that category of loss.

Keywords : Warranty, Insurance Act 2015, Suspension of Insurer's Liability, Remedy of Breach